

내압용기검사신청서 [] 설계단계
[] 생산단계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80일(설계단계) 30일(생산단계)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상호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사업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

신청 내용	종류 및 내용적	
	내압용기 [] 압축천연가스(CNG)용 <u> ℓ </u> [] 액화천연가스(LNG)용 <u> kg </u> [] 액화석유가스(LPG)용 <u> kg </u> [] 압축수소가스(CHG)용 <u> ℓ </u>	
	내압용기부속품 [] 압축천연가스(CNG)용 [] 액화천연가스(LNG)용 [] 액화석유가스(LPG)용 [] 압축수소가스(CHG)용	
	검사 희망일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

첨부물	내압용기	수수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금액
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